

대중문화예술인(모델 중심) 부속 합의서

[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] (주)모델디렉터스 (이하 ‘기획업자’ 라 한다)와
 [대중문화예술인] (본명 :) (이하 ‘아티스트’ 라 한다)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
 (이하 ‘주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함에 있어서 ‘주 계약’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보충하거나, 정
 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) 계약기간 내 수익분배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	수익분배대상	분배비율 (%)		비고
		기획업자	아티스트	
1.	예능 관련 방송매체 출연건	50	50	-
2.	드라마 및 영화 출연료	50	50	-
3.	방송으로 전파되는 각종 시상식	50	50	-
4.	모델 브랜드 촬영	50	50	-
5.	매거진 촬영	50	50	-
6.	TV CF 출연료	50	50	-
7.	패션 쇼 및 연예 행사	50	50	-
8.	‘연기자’와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한 상품화 부가사업	50	50	(예시) DVD, 화보집, 문구류, 팬시류, 완구류, 전자제품/ 주변기기류, IT 제품 및 악세사리류, 우표, 캘린더, 캐릭 터, 사진, 그림, 피규어, 공연 MD, 캠페인 등
9.	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사업	50	50	- 어플리케이션, 게임관련 (광고를 제외한 유료 캐릭터 판매등) - 제 3자의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의 영상을 노출함으 로서 발생한 광고등의 수익 (네이버 V 라이브, 네이버 동영상서비스 등)
10.	기타 항목 수익(SNS 포함)	50	50	-

단, ‘기획업자’와 ‘아티스트’간 ‘주 계약’ 제3조에 합의한 내용 외에 발생한 별도의 활동내용 또
 한 위에 합의된 분배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분배한다.

2) ‘기획업자’와 ‘아티스트’간 합의하에 진행하는 모델 활동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5:5로 진행한다.

단, ‘기획업자’ 또는 ‘아티스트’간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제외한다.

(제반비용은 ‘기획업자’가 우선 지급하며, ‘아티스트’의 수입에서 제한 후 지급한다.)

- 3) 계약이 종료된 후 ‘기획업자’를 통하여 발생한 모든 매출은 ‘기획업자’와 ‘아티스트’간 5:5로 수익을 분배한다.
- 4) ‘기획업자’는 계약기간 동안 ‘주 계약’ 제4조 2항, 3항 외 발생한 활동을 위한 모든 국가의 출연, 계약 교섭 및 계약 체결권을 갖는다.
- 5) 부속합의서 1항의 수익분배는 ‘기획업자’가 ‘아티스트’에게 투자하는 실비용에 대해 ‘아티스트’가 발생시키는 수익 금원으로 우선 공제한 뒤 ‘주 계약’ 제7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분배한다. 단, ‘기획업자’가 ‘아티스트’에게 투자하는 실비용 항목은 ‘주 계약’ 제 7조에서 규정한 내용 외 ‘아티스트’에게 투자되는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한다.
- 6) ‘기획업자’는 매달 정기적으로 ‘아티스트’의 수준과 상태를 평가, 점검하여 ‘기획업자’의 기준 (전문 모델로서의 자질과 지식, 기술)에 따라 완벽하지 못하거나 수준 미달 시, ‘아티스트’는 추가 트레이닝을 받아야 할 의무를 갖는다. ‘기획업자’의 판단에 따라 ‘아티스트’는 활동 및 행사에 출연 유보될 수 있다.
- 7) ‘아티스트’는 오디션 인터뷰 등 공식/비공식 행사에 ‘기획업자’의 요청이 있을 시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동의하고 이행한다.
- 8) ‘아티스트’는 항상 프로페셔널한 모델 활동을 위해 최선의 정신적·육체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 (프로페셔널이라 함은, 전문 모델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말한다.)
- 9) ‘아티스트’는 ‘기획업자’가 진행하는 모든 범위의 결정,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는데 동의하며 외모, 태도, 행동을 계약기간동안 잘 준수하도록 한다.
- 10) ‘아티스트’는 휴무가 필요할 시 최소 7일 전 ‘기획업자’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‘기획업자’는 ‘아티스트’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일정을 확인 후 휴무를 확정하도록 한다. ‘아티스트’의 휴무 요청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일정이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을 우선으로 한다. 또한, ‘아티스트’ 및 ‘기획업자’ 상호 동의된 휴무 일정이 있더라도 ‘기획업자’의 판단에 따라 ‘아티스트’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일정이 생길 경우 ‘기획업자’는 ‘아티스트’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‘아티스트’는 이에 적극 응하도록 한다.
- 11) ‘아티스트’가 10일 이상 장기 휴무가 필요할 시 최소 14일 전 ‘기획업자’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‘기획업자’는 ‘아티스트’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일정을 확인 후 휴무를 확정하도록 한다. ‘아티스트’의 휴무 요청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일정이 있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을 우선으로 한다. 또한, ‘아티스트’ 및 ‘기획업자’ 상호 동의된 휴무 일정이 있더라도 ‘기획업자’의 판단에 따라 ‘아티스트’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일정이 생길 경우 ‘기획업자’는 ‘아티스트’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‘아티스트’는 이에 적극 응하도록 한다.
- 12) ‘아티스트’의 요청으로 주 계약 제 17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외 30일 이상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을 하지 않는 장기 휴면 상태로 전환될 시 ‘아티스트’의 계약 종료 기간은 휴면 상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. 휴면 상태 기간 중 ‘아티스트’는 언제든지 ‘기획업자’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 재개 요청 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. ‘아티스트’가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 재개 요청 시 ‘기획업자’는 ‘아티스트’의 정신적·육체적 상태 점검 후 활동 재개 또는 활동 유보 판단을 할 수 있다. ‘아티스트’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요청 시 주계약 제 17조에 따른다.
- 13) ‘아티스트’는 ‘기획업자’의 사전 논의 및 동의 없이 스타일 변화를 하여서는 안 된다. 스타일 변화가 필요할 시 반드시 ‘기획업자’에게 사전 공유하고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. (예: 헤어스타일의 변화, 성형(시술포함), 문신 등)
- 14) ‘아티스트’는 ‘기획업자’의 임직원 및 광고주, 기타 유관 관계자와 이성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.

- 15) ‘아티스트’는 ‘기획업자’를 통하지 않고 ‘아티스트’ 본인에게 직접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 의뢰가 들어 올 시(EX. SNS 시딩, 상품 협찬, 게런티 문의 등) ‘아티스트’는 반드시 ‘기획업자’를 통하여 일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16) ‘아티스트’는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체 및 개인에게 ‘기획업자’의 동의 없이 본인의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을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.
- 17) ‘아티스트’는 ‘기획업자’가 동의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없으며, 적발 시 ‘기획업자’의 판단에 따라 ‘아티스트’는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에 출연 유보 될 수 있다.
- 18) ‘아티스트’는 약속된 스케줄에 무단으로 불참석 할 시 ‘기획업자’의 판단에 ‘아티스트’는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에 출연 유보 될 수 있다.
- 19) ‘아티스트’는 약속 시간에 늦거나 모델로써의 바디 컨디션 및 촬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을 시 ‘기획업자’의 판단에 따라 ‘아티스트’의 대중문화용역 활동에 출연 여부가 변경 또는 유보 될 수 있다.
- 20) 계약 발효 후 부속 합의서 및 주 계약에 명시된 모델로서의 프로페셔널 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,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‘기획업자’는 ‘아티스트’에게 아래 페널티를 공지 할 수 있고,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Penalty Guide			
Category	Detail	Price	Memo
자카	연습실 면담 등 기타 스케줄 지각	경고	경고 3회 누적 마다 10만원씩 차감
	캐스팅 행사 촬영장 등 모델 촬영 관련 스케줄 지각	1 회당 10만원	15분 이상 지각 시 차감하며 지각 횟수 3회 초과 시 기획업자는 아티스트에게 손해배상(지각한 촬영건의 모델료 50%)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지각 시간으로 인해 촬영 피해액 발생 시 손해 배상과 별도로 모델료에서 차감 한다
노쇼	연습실 면담 등 기타 스케줄 노쇼 (사전 공지 없을 시)	1 회당 10만원	-
	사전 합의 되지 않은 캐스팅 행사 촬영장 등 촬영 관련 스케줄 노쇼	위약금 (모델료의 3배)	노쇼로 인해 촬영 손해배상액 발생 시 위약금과 별도로 모델료에서 차감 한다
매거진	매 월 목표 체중 유지 관리가 안 될 경우	경고	경고 3회 누적 마다 10만원씩 차감
	사전 공유 없는 일방적 OFF 신청	위약금 (일평균 매출 3배)	OFF 기간 X 일 평균 매출 X 3
	사전 공유 없는 장기(24시간) 연락 두절	1 회당 30만원	연락 두절로 인해 촬영 피해액 발생 시 페널티 금액 별도로 모델료에서 차감 한다
	사전 공유 없는 모델 SNS 계정 내 자사 MA 계정 삭제	1 회당 50만원	3회 초과 시 계약 파기의 의사로 간주 되며 '기획업자'는 주 계약서 제 17조에 의거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모델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	사전 공유 없는 독단적 대중문화예술용역 활동 (SNS 시딩, 협찬, 행사 촬영 등)	위약금 (모델료의 3배)	단독 활동으로 인해 '기획업자'에게 손해발생 시 위약금과 별도로 모델료에서 차감 한다
	상호 합의 되지 않은 촬영 거부	경고	경고 3회 초과 시 거부한 촬영 모델료의 50%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
	사전 합의 되지 않은 스타일링 변화	1 회당 50만원	스타일링 변화로 인해 '기획업자'에게 손해발생 시 페널티 금액과 별도로 모델료에서 차감 한다
	개인 사생활 이슈로 인한 피해	위약금 (손해배상액의 3배)	사생활 이슈로 인해 '기획업자'에게 손해발생 시 위약금과 별도로 모델료에서 차감 한다
	회사 비밀 유지 계약 위반	손해배상	계약 파기의 의사로 간주 되며 '기획업자'는 주 계약서 제 17조에 의거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모델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
- 21) ‘아티스트’는 ‘기획업자’의 판단에 따라 개인 SNS(인스타그램 등)채널의 콘텐츠 구성에 변화가 필요 할 시, 이에 최대한 협조 하도록 한다.
- 22) ‘아티스트’는 계약기간 동안에 ‘기획업자’의 전속모델로서 개인 SNS(인스타그램 등)채널에 상호 명 표기를 하도록 한다. (EX. @modeldirectors_ma)
- 23) ‘아티스트’는 계약서를 날인 한 시점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‘기획업자’의 요청에 따라 프로페셔널한 모델이 되기 위한 과정(테스트 샷, 워킹 연습, 체중 감량 등)에 참석할 의무를 이행한다.
- 24) ‘아티스트’는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‘기획업자’ 외 동종 업계 회사에서 연락 및 미팅 요청이 있을지라도 그에 응해서는 안 되며, 즉시 ‘기획업자’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. 계약 종료 3개월 시점부터 ‘아티스트’는 ‘기획업자’의 동종 업계 회사와 연락 및 미팅이 가능하다.

본 부속 합의서는 ‘주 계약’보다 우선 적용되며 ‘주 계약’의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다. 본 부속 합의서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, ‘기획업자’와 ‘아티스트’는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

주 소 : 서울시 광진구 자양강변길 31, 성수빌딩 4층
 회사명 : 주식회사 모델디렉터스
 대표자 : 신 영 운 (인)

대중문화예술인

주 소 :
 생년월일 :
 연락처 :
 SNS계정 아이디 :
 성 명(실명) : (인)

대중문화예술인의 비상연락망 1

주 소 :
 성 명(실명) :
 연락처 :

대중문화예술인의 비상연락망 2

주 소 :
 성 명(실명) :
 연락처 :